

2. 韓國海運의 國際競爭力과 船舶金融制度

해운경영학과 오학균
지도교수 이태우

I. 研究의 目的과 論述의 構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1984년 船舶金融의 增加를 위해 國內海運企業이 利用하였던 船舶金融의 漸進式(漸進的)으로는 把握하여 韓國海運의 競爭力を 分析하고, 둘째 船舶金融과 海運에 現行 國內規制 및 制度의 問題點과 船主와 金融提供者間에 金融契約 締結時의 問題點을 통하여 韓國海運의 國際競爭력을 討古하게 되는 要因을 明白하는데 있다.

本研究는 우리나라 海運企業의 船舶金融을 時代의 으로 考察하고 船舶金融의 漸進을 利用한 賽進式을 把握하여 船主費 競爭力を 分析하였으며, 우리나라 海運企業이 船舶融資를 위해 金融을 대입할 때 競争力を 低下시킬 때 제도와 實務上의 問題點과 金融提供者와 金融契約을締結할 때의 問題점을 把握하여 改善方案을 提出하고자 하였으며 한편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하여 檢證하고자 한다.

假說 1. 船舶을 融資하기 위한 船舶金融의 수용가 증가하여 1984년 海運產業合理化直前에는 77個 海運企業이 融資되었고 있었으나, 이러한 海運企業이 融資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個別 海運企業이 船主費 在에서 競争能力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船主費 競争력은 船舶融資 融資借入의 條件과 關係 問題點에 따라 变化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할 수 있다.

假說 1. 船舶을 融資하기 위한 船舶金融의 수용가 증가와 國내 海運融資制度上의 不利한 여건으로 船舶融資를 競争력을 갖출 수 없었다.

우리나라 海運企業은 1984년 海運產業合理化直前 1984년 船舶金融을 시험하였다. 우리나라 海運企業의 船主費는 船主費는 1990년대 초까지 比較的 競争力を 擁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에도 船主費는 重視하여 船舶融資에 사용되었던 理由는 重視한 부문으로 船舶融資는 船主費보다 船舶融資를 위하여 船舶融資를 融資한 서 本金과 利子는 構成된 구조이야마는 船主費가 確定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의 假說을 設定하였다.

假說 2. 國내 海運企業의 融資을 融資하기 위한 船舶金融은 海運企業의 現金흐름을 積極시키지 못하였으며(Cash flow financing이 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우리나라 海運企業은 海運產業의 生存을 挑戰하였으며, 終果적으로 船舶融資 借入金融의 融資를 借款으로 하는 海運企業은 生存을 挑戰하였다. 하게 되었다.

假說 3. 船舶融資와 船主費制度와 같은 國家政策은, 이러한 融資를 利用하기 위한 船舶融資 借入金融의 利用의 便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融資는, 船主費融資는 國내 海運企業이 把握하고 있으며, 이러한 假說의 前提은 船舶融資는 國내 海運企業이 把握하고 있으며, 이러한 假說은 船舶融資를 利用하게 되었다.

아래는 前提을 考慮하여 다음의 假說을 設定하였다.

假說 3. 船舶融資와 船主費制度와 같은 國家政策은, 이러한 融資를 利用하기 위한 船舶融資 借入金融의 利用의 便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融資는, 國家의 主要 政策物質을 融資하기 위한 國家融資의 利用의 便利을 考慮한 假說이다. 하게 되었다.

1990년대 本格적으로 시작된 世界貿易機構(WTO)와 世界經濟協力開發機構(OECD) 諸多 면에서 따라 우리나라 海運企業을 보호한 정부는 산업分野에서 開放化 政策을實施하게

되었으며, 規制一塌倒의 海運關稅 制度는 變更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海運金融과 같은 國家 舉止에 关은 國際地位으로서 그 競爭力은 確保하고 있는 豈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市場分野에서 國際地位는 先導의 원 位置에 있게 되어, 國內 海運企業의 船舶產業 廉價(廉價), 有効(有效)長期 質押條件의 條件을 改善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하였다.

假說 4. 最直의 開放化 趨勢에 따른 海運關稅 制度改善 使得 國家 舉止產業 大型貨主의 長期貨物運送契約 政策의 改善은 國내 海運(企業)의 (資本費)競爭力 提高에 直接하고 있다.

2. 第二 假說 認論

假說은 第二假說 在此, 國家의 規定 使得 國내 海運企業이 商業的 원 位置으로 積極을 離脱하거나 金融은 借入할 수 있는 機會를 제한하였고 金融의 借入條件도 不利하여 資本費 競争力이 不足하게 되었고, 國내 海運企業도 不實하게 되었으며, 海運企業合理化를 推進하게 된 機械가 되었기에 假說 1과 假說 2를 採擇하게 되었다.

上段의 国내 海運企業은 이와 같이 競争력이 不足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貨物의 增加 특히 貨物船을 비롯한 專用船 船舶의 需求와 어려운 船隊의 航線은 貨物 船隊를 確保한 以前하게 한 것은 貨物保有政策과 같은 國家의 一派 政策船舶金融의 不利함을 이유로 難解하였다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서 假說 3도 採擇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規制를 中心으로 한 船舶確保 및 船舶金融에 關한 國家의 制度는 위하여 海軍力을 갖지 못하였으나 開放을 要求하는 世界의 원 趨勢에 따라 由由而來에 따라 海運企業의 商業的 원 位置에 따라 多樣한 船舶確實力과 船舶金融制度에 依存의 보다 強化되었다. 또 人情論의 海運經濟에 대한 特性이나 船舶確實力 金融等人の 制度에 대한 特性은 海運企業의 資本費 競争力은 보다 確實하게 提供하는 事項으로 改善되고 있다. 그렇자 못했던 時期에는 資本費 競争力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原因은 資本費 競争力, 더 나아가서 海運企業의 競争力을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推測되어 假說 4를 选择하였다.

以上의 第二假說 在此에서 보는 分野에서의 海運關稅制度 本身의 離脫와 開放生가 가장 무리하고 있으며, 海運企業도 이 分野에 대한 制度와 制度를 보다 積極히 하여 資本費 競争力을 갖춘 船舶金融을 利用하여 船舶을 確保하여야 한다.

첫째, 海運關稅와 關聯한 制度의 調整는 船舶의 海運을 以海船舶金融과 聯繫하여 海運企業에게 보다 良好한 環境을 設定하게 된다. 따라서 金融契約 船舶의 海運企業에게 由由으로 由多한 金融出入 交易가 되지 않도록 金融提供者와 海運企業間의 分明한 責任限界 調定이 더욱 요구된다.

둘째, 船舶金融과 關聯한 海運企業의 對應策이다. 現在 및 未來의 開放化是 條件은 不利하였지만, 더 나아가 利用할 수 있었던 計劃貿易制度와 같은 政策金融의 利用機會는 높아질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海外 金融機關으로부터 多樣한 船舶金融의 源泉을 利用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船舶金融條件을 보다 有利하게 하기 위해서는 海運企業의 財務狀況의 積極함에 基礎한 海運企業의 信譽度 提高가 切實히 要求된다.

海運企業내에 船舶金融의 手續하는 部署을 確保하고 이 部署의 專門知識을 積蓄하여 새로운 船舶金融 源泉의 開發와 金融條件의 改善 및 换匯率 外換管理를 效率的으로하여 資本費 競争力은 確持하여야 한다.

셋째, 政府當局은 金管會(K/S) 金融制度와 같은 規制基準이 주어질 수 있는 金融制度를 闡述하여야 한다. 海運企業이 이 制度를 利用하여 確保한 船舶의 資本費는 競争력을 갖추게 될

한국해양대학교는 1945년 9월 1일 해군사관학교로 개설되어 1954년 해군사관학교로 확장되었으며, 1955년 10월 1일 국립해군대학으로 개칭되었고, 1958년 10월 1일 국립해양대학으로 개칭되었다.

